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0. 1.

환 경 부

목 차

1. 사업 목적 및 개요	1
2. 보조사업 대상 선정 절차	3
3.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절차	4
4.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6
5. 사후관리 및 보고	11
6.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13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목 적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내용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다. 2020년도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 2020년 본예산 : 349,458백만원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 10,100대, 227,250백만원
 - 수소버스 보급 : 180대, 27,000백만원
 - 일반수소충전소 설치 : 27개소(민간자본보조 12기), 40,500백만원
 - ※ 1기당 설비비용의 최대 50%, 1,500백만원 지원(부지매입비 등은 제외)
 - 수소버스충전소 설치 : 13개소, 54,600백만원
 - ※ 1기당 설비비용의 최대 70%, 4,200백만원 지원(부지매입비 등은 제외)

라.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수소버스(자치단체자본보조)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수소충전소(자치단체자본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마. 보조금 지급대상자

-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
 -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 일반수소충전소(자치단체자본보조)
 -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일반수소충전소(민간자본보조)
 -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수소버스충전소(자치단체자본보조)
 - 수소버스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급물량, 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조사업 대상 선정 절차

(1)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

가. 보조금 대상차종 신청

- 보조금 대상차종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서 검토

- 환경부장관은 보조대상 및 기준 적합성 여부 등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대상차종 여부를 확정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내용이 보완,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보완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 대상차종 통보·공지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자동차 제작사에 통보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공개내용 : 차량명(모델명), 제작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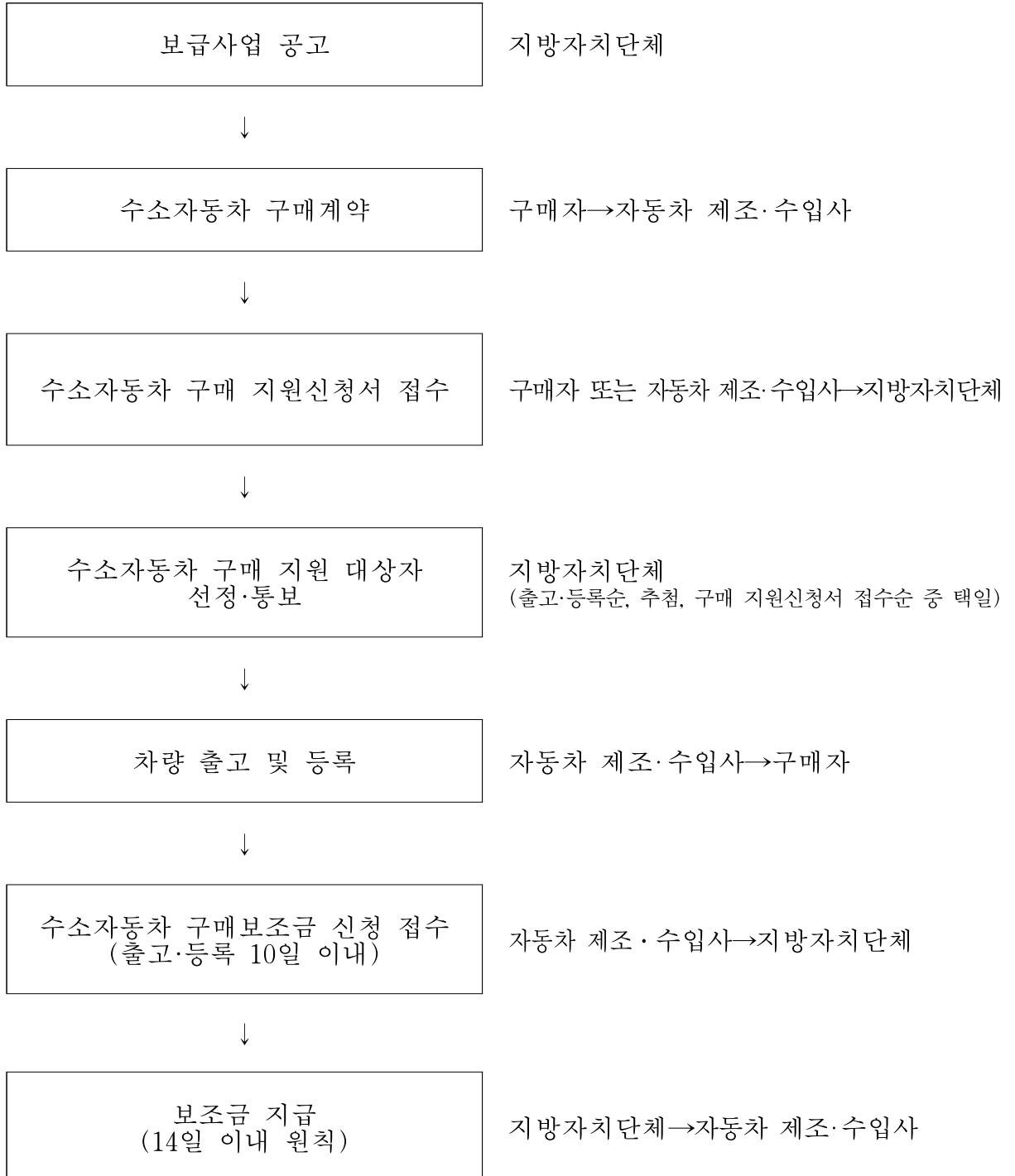
라. 보조금 대상차종 변경 신청

-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 받은 차종이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3.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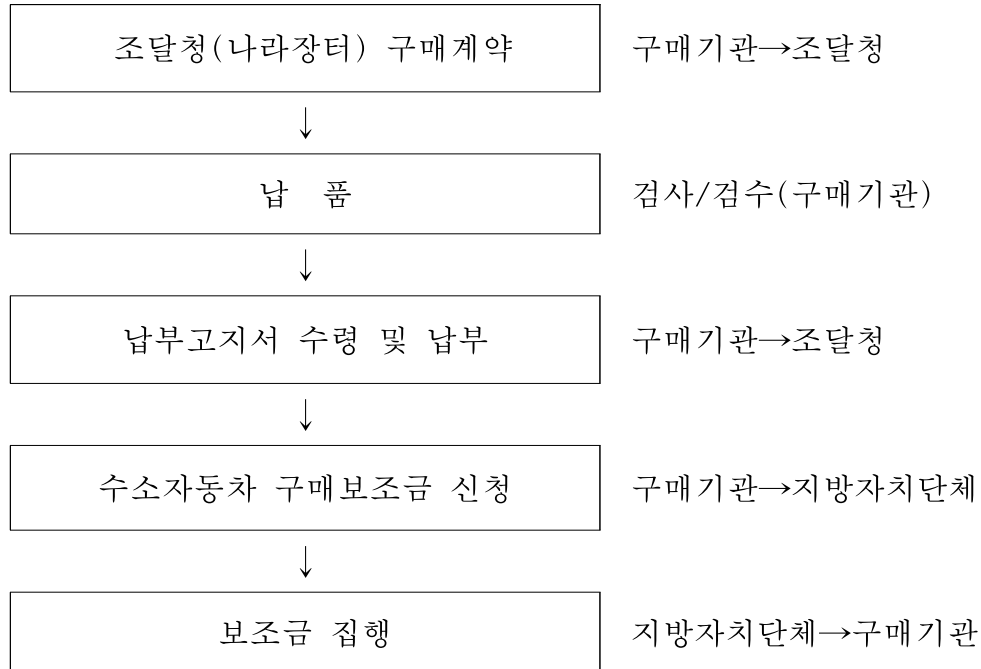
(1) 수소자동차

가. 민간부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나.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별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2) 수소충전소

가.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 보조금 지급 대상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선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절차·방법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사전에 선정해야 함
-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수소충전소 저장시설(T/T) 등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
 - 설치 부지의 소유권 확보 또는 부지 소유자와의 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 “국토의 개발 및 제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지제한

- 수소안전 등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민원 발생
 - 기타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을 평가
- 제안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신인도, 재무현황 등
 - 구축비용, 부지확보, 구축시기 등 충전소 구축의 타당성 등
 - 수소연료의 조달계획, 운영계획 등 충전소 운영의 적정성 등

4.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집행계획의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대상 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계획
 - 보조사업 후 운행·운영 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나.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비 보조사업 연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으로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물량의 급격한 변경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함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예산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잔금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급(선금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 광역자치단체인 수소연료전지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 및 충전소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액에 해당되는 시·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부조건을 부여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하여야 함.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광역자치단체인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의무 운영기간 등 필요한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교부조건에 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교부

-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교체물량의 급격한 변경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의 집행

(1)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 등에 수소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수소연료 전지차량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급대수, 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야 함.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직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 개인에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을 지급 하는 때에는 그 충전소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계획을 알려주는 등 충전 불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대상자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및 대상자 선정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연료전지차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 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조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2) 공통사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수소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가) 보조금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수소버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나)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 금액 및 대상차종

차 종	금액(천원)	비 고
수소연료전지차(넥쏘)	22,500	정액보조
수소버스	150,000	정액보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 집행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연료전지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연료전지차 제작·판매사에게 직접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음.
(선금급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4) 수소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설비 소요비용과 필수 부대 설치 비용* 일체
 - * 보조금 중 부지매입비, 자체 추가하는 시설은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
- 다만, 수소버스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T/T) 2기 구매비 포함(10억원 이내)

(나) 보조금 지원기준

종류별	사업 비용(천원)	비 고
일반수소충전소	3,000,000	국비 50%, 지방비(또는 민간사업자) 50%
수소버스충전소	6,000,000 (T/T 2기 1,000,000 포함)	국비 70%, 지방비 30%

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5.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운행 상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함.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행 상황(운행중단일 및 사유, 사고유무 등), 차량관리 적정 여부에 의한 충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
- 수소충전소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인·허가 협조,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를 적극해야 함.
- 수소충전소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조사·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는 익월 10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1호서식)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 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지연, 충전설비의 문제 등 구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수소충전소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 구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상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함
- 또한, 한국환경공단 충전정보시스템에 충전소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수행기관은 충전정보시스템에 충전기의 상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지정,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충전인프라 관련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분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검토결과에 따라 현지 집행점검 실시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정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및 차량등록증 등 차량구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수소충전소: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충전소 설치 및 물품구매계약서 등

6.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익년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별지 서식]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별지 제5호서식)
6.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별지 제6호서식)
7.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사후관리 보고(별지 제7호서식)
- 7-1.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현황 관리 보고(별지 제7-1호서식)
8.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붙임 1)

보조금 업무 처리 흐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 전년도 6.30까지 기획재정부 제출(환경부→기재부)

↓

보조금예산 통지

- 전년도 10.15까지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환경부)

↓

- 국회 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금년 1월, 교부신청 기한 및 관계서류 제출토록 지자체 통보(환경부)

↓

- 사업수행기관이 교부신청서(구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시기 등 결정

↓

- 교부 결정시 사업수행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 통보

- 환경부의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수행기관이 차량 구입 및 충전기 설치기관에게 보조금집행

수행상황 보고 및 실적보고

- 수행상황은 사업수행기관이 분기(월)마다 환경부에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폐지 승인 시 사업수행기관이 환경부에 보고

(붙임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

제 작 사	현대자동차(주)
모 델 명	넥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출력	95kW
배터리 출력	40kW
모터 출력	113kW
수소탱크 압력	700bar
에너지소비효율	96.2km/kg(17'') / 93.7km/kg(19'')
0→100km/h 가속시간	9.20초(17'') / 9.54초(19'')
최고속력	177km/h(17'') / 179km/h(19'')

※ <참고> 수소 완충전 시 주행거리 : 609km(17'') / 593km(19'')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별지 제1호서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제 작 사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제원관리번호	
				배출가스인증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연 료 명		승차정원(인)		공 차 중 량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		연료전지 용량(A)	
전동기 종류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전동기 전경전압(V)		최고속도(km/h)		연료탱크용량(L)	
☐ CO ₂ 배출량 측정결과					
구 분		CVS-75모드	HWFET모드	복합모드	
5cycle 보정	CO ₂ 배출량(g/km)				
	연료소비율(km/kg)				
☐ 측정기관					
시험기관명				측정일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첨부서류 > 1. 시험보고서 1부 2.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1부 3.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 외관사진 1부 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통보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통지서					
제 작 사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제원관리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연 료 명		승차정원(인)		공 차 중 량	
구동 연료전지 종류		연료전지 출력전압(V)		연료전지 용량(A)	
전동기 종류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전동기 전경전압(V)		최고속도(km/h)		연료탱크용량(L)	
☐ CO ₂ 배출량 측정결과					
구 분		CVS-75모드	HWFET모드	복합모드	
5cycle 보정	CO ₂ 배출량(g/km)				
	연료소비율(km/kg)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첨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작성자 : ○○시·도 ○○시·군 ○○○○과, 이름 ○○○, 연락처 000-000-0000)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계획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충전소 설치계획

충전 방식	년 도					기 존 충 전 소 설 치 현 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설 치 대 수	설 치 지 점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총 백만원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
- 수소 충전소 설치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행계획

○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행대수, 운행노선(사진 또는 그림첨부), 기대효과 등

☐ 충전소 설치계획

○

※ 사업자 선정, 설치 부지 선정(주변경관 사진 첨부 및 부지확보 방안 등 작성), 계약체결, 설치 공사, 인·허가, 기대효과 등

3. 기타 고려사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합 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사업 기간					
계좌번호, 은행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구입계획서 첨부)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 일정 1부(월별 추진일정)					

(첨부)

2020년 사업계획(안)

I. 기본현황

☐ 사업자 :

☐ 법적근거

○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 내용 :

☐ 총사업비(사업기간) : 천원 (20○○ - 20○○, ○년)

☐ 보조금 보조율 :

II. 2019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 일반현황

○ 사업기간 :

○ 사업내역 :

○ 소요사업비 :

☐ 2019년 사업추진 경과

○

☐ 수소연료전지차 운행상황 및 수소충전소 관리실태

Ⅲ. 2019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재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국비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IV. 2020년도 예산 및 집행계획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경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집행계획

- 보급대상 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계획
- 보급 후 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V.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
- ☐

☐ 잘된 점

- ☐
- ☐

☐ 미흡한 점

- ☐
- ☐

VI. 향후계획

☐ 미흡한 점 해소중심으로

- ☐
- ☐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

(/4분기)

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2. 추진사항

☐ 보급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충전소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

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2. 추진실적

☐ 보급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첨부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운행관련 서류

다. 충전소 설치 및 운영관련 서류

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기관 현황

마.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사후관리 보고

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영기관명	차종	차량번호	월간 충전량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3. 수소 충전소

설치 기관명	압력	생산방식	월간 충전량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현황 관리 보고

1. 사업명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지자체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구축현황

사업명	추진현황	향후계획	완료예정일

3. 특이사항 등

-
-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연료전지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군수(도지사) 귀하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